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69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9.

발의자 : 김영진 · 이정현 · 이해식
서삼석 · 김교홍 · 김태년
윤후덕 · 조승래 · 허영
박지원 · 최혁진 · 안태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으로서, 미수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024년 기준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등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납부기한이 도래한 실정임. 이러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경우, 국가 재정에는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됨.

이에 이미 부과·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처분권의 위탁이 아닌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3조의4 신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연체료등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 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연체료 (이하 이 조에서 “연체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 연체료등을 체납한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연체료등을 체납한자의 재산 조사
3. 연체료등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연체료등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연체료등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73조의4(연체료등의 징수 관련</u></p> <p><u>사실행위의 위탁) ① 중앙관서</u></p> <p><u>의 장등은 독촉에도 불구하고</u></p> <p><u>납부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의</u></p> <p><u>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u></p> <p><u>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73조</u></p> <p><u>제1항에 따른 연체료(이하 이</u></p> <p><u>조에서 “연체료등”이라 한다)를</u></p> <p><u>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u></p> <p><u>공사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u></p> <p><u>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u></p> <p><u>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u></p> <p><u>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u></p> <p><u>시 위탁할 수 없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연체료등을 체납한자의 주</u> <u>소 또는 거소 확인</u> <u>2. 연체료등을 체납한자의 재</u> <u>산 조사</u> <u>3. 연체료등의 납부를 촉구하는</u> <u>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u> <u>문 상담</u> <u>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u> <u>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u>

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연체료등
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
의 해지 등 연체료등 징수 관
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